

의안 번호	2525	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2. 5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5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6.(화)

2. 제안이유

- 돌봄 통합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의회사무국의 비서 업무 추진 인력 배치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를 “719명” 에서 “720명” 으로 1명 증원,
의회사무국의 “24명” 에서 “25명” 으로 1명 증원(안 제2조)
- 나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(안 제4조 별표3)
 - 1) 총 계: 719명 → 720명(증 1명)
 - 2) 일반직: 716명 → 717명(증 1명)
 - 가) 6급 이하: 663명 → 664명(증 1명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돌봄 통합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의회사무국의 비서 업무 추진 인력 배치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 정원 총수를 719명에서 720명으로 1명 증원,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4명에서 25명으로 1명 증원하고,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별표 3의 내용중 총계 719명에서 720명으로 증 1명, 일반직 719명에서 717명으로 증 1명, 6급이하 663명에서 664명으로 증 1명으로 변경하는 것임.
-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

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